

#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,기타특별회계

장 : 100 지방세수입

관 : 110 지방세

항 : 111 보통세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총 계	381,904,979	281,453,315	100,451,664
100 지방세수입	6,425,000	5,335,000	1,090,000
110 지방세	6,425,000	5,335,000	1,090,000
111 보통세	6,320,000	5,230,000	1,090,000
111-04 주민세	1,200,000	800,000	400,000
[ 일반회계 ]	1,200,000		
< 세무회계과 >	1,200,000		
1)주민세	1,200,000,000 =	1,200,000	
111-05 재산세	700,000	600,000	100,000
[ 일반회계 ]	700,000		
< 세무회계과 >	700,000		
1)재산세	700,000		
2)주택분	30,000,000 =	30,000	
2)토지분	670,000,000 =	670,000	
111-06 자동차세	970,000	830,000	140,000
[ 일반회계 ]	970,000		
< 세무회계과 >	970,000		
1)자동차세	970,000,000 =	970,000	
111-10 담배소비세	1,750,000	1,700,000	50,000
[ 일반회계 ]	1,750,000		

장 : 100 지방세수입  
 관 : 110 지방세  
 항 : 111 보통세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세무회계과 >		1,750,000		
1)담배소비세	1,750,000,000 =	1,750,000		
111-11 주행세		1,700,000	1,300,000	400,000
[ 일반회계 ]		1,700,000		
< 세무회계과 >		1,700,000		
1)주행세	1,700,000,000 =	1,700,000		
112 목적세		25,000	25,000	0
112-03 사업소세		25,000	25,000	0
[ 일반회계 ]		25,000		
< 세무회계과 >		25,000		
1)사업소세	25,000,000 =	25,000		
113 지난년도수입		80,000	80,000	0
113-01 지난년도수입		80,000	80,000	0
[ 일반회계 ]		80,000		
< 세무회계과 >		80,000		
1)지난년도수입	80,000,000 =	80,000		
200 세외수입		21,316,841	22,867,030	△1,550,189
210 경상적세외수입		5,956,912	6,198,178	△241,266
211 재산임대수입		178,500	122,300	56,200
211-01 국유재산임대료		35,000	20,000	15,000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1 재산임대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[ 일반회계 ]		35,000		
< 세무회계과 >		35,000		
1)국유재산임대료	35,000,000 =	35,000		
211-02 공유재산임대료		143,500	102,300	41,200
[ 일반회계 ]		143,500		
< 세무회계과 >		143,500		
1)공유재산임대료	120,000,000 =	120,000		
1)행정재산임대료	3,500,000 =	3,500		
1)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임대료	20,000,000 =	20,000		
212 사용료수입		1,198,325	1,041,115	157,210
212-01 도로사용료		26,116	20,789	5,327
[ 일반회계 ]		26,116		
< 세무회계과 >		26,116		
1)도로사용료(군도이하)		26,116		
2)한전주	300원*6,393본 =	1,917		
2)통신주	300원*801본 =	240		
2)공중전화박스	12,050원*17개소 =	204		
2)통신관로	75원*227,775m =	17,083		
2)도로점용(28건)	6,672,000 =	6,672		
212-03 하수도사용료		7,675	6,842	833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2 사용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7,675		
< 시설관리사업소 >		7,675		
1)하수도사용료 수입		7,675		
2)가정용		1,700*300가구*12월 =	6,120	
2)업무용		2,400*15가구*12월 =	432	
2)영업용		2,340*40가구*12월 =	1,123	
212-04 상수도사용료		955,134	782,694	172,440
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955,134		
< 시설관리사업소 >		955,134		
1)상수도사용료 수입		955,134		
2)가정용		7,000*7,100가구*12월 =	596,400	
2)업무용		32,000*450가구*12월 =	172,800	
2)영업용		37,000*410가구*12월 =	182,040	
2)초과요금		778,800,000*5/100*10% =	3,894	
212-07 입장료수입		92,000	92,000	0
[ 일반회계 ]		92,000		
< 세무회계과 >		92,000		
1)홍도관람료 수입		92,000		
2)어른(개인)		1,000원*50,000명 =	50,000	
2)어른(단체)		800원*50,000명 =	40,000	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2 사용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2)군경 및 청소년(개인)	500원*2,500명 =	1,250	
	2)어린이(개인)	250원*3,000명 =	750	
	212-08 기타사용료		117,400	138,790
	[ 일반회계 ]		117,400	
	< 세무회계과 >		117,400	
	1)흑산여객선터미널임대료수입(1동 490㎡)	10,000원*490㎡ =	4,900	
	1)공유수면 점사용료	150,000원*10건 =	1,500	
	1)항만 및 어항시설 사용료	50,000원*20건 =	1,000	
	1)도서내연발전소전기사용료수입	100,000,000 =	100,000	
	1)지하수사용료		10,000	
	2)홍도1구(지하수)	10,000,000 =	10,000	
	213 수수료수입		309,365	1,419,245
	213-01 증지수입		200,565	705,245
	[ 일반회계 ]		200,565	
	< 세무회계과 >		200,565	
	1)제증명발급및유기한민원	14,000,000원*12월 =	168,000	
	1)지적공부증지수입	2,700,000원*12월 =	32,400	
	1)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 수수료	2,500원*30건 =	75	
	1)건설기계 신규등록 수수료	4,500원*20건 =	90	
	213-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		69,000	69,000
				0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3 수수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[ 일반회계 ]		69,000		
< 세무회계과 >		69,000		
1)쓰레기봉투판매(홍도)	30,000원*300 =	9,000		
1)쓰레기봉투판매(읍면)	200,000원*300 =	60,000		
213-04 기타수수료		39,800	645,000	△605,200
[ 일반회계 ]		24,800		
< 세무회계과 >		24,800		
1)분뇨처리 수수료	5원*3,760,000 l =	18,800		
1)대형폐기물 수수료(홍도)	1,000,000 =	1,000		
1)대형폐기물 수수료(읍면)	10,000원*500건 =	5,000		
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15,000		
< 시설관리사업소 >		15,000		
1)하수종말처리장 배수설비공사	1,500,000*10가구 =	15,000		
214 사업수입		1,908,199	1,528,877	379,322
214-01 사업장생산수입		2,946	2,946	0
[ 일반회계 ]		2,946		
< 세무회계과 >		2,946		
1)예찰답 벼 생산물	43,000원*22가마 =	946		
1)농업기술 실증포 운영		2,000		
2)현대화하우스 부지화판매	20,000원*50박스 =	1,000		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4 사업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	
	2)현대화하우스 무화과판매	2,500원*400kg =	1,000		
	214-05 분담금수입		510,000	125,000	385,000
	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510,000		
	< 시설관리사업소 >		510,000		
	1)분담금 수입	100,000*5,000전 =	500,000		
	1)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수입	2,500,000*4가구 =	10,000		
	214-08 의료사업수입		1,390,253	1,392,431	△2,178
	[ 일반회계 ]		1,390,253		
	< 세무회계과 >		1,390,253		
	1)보건소 일반환자 수입금(보건행정)	2,200,000원*12월 =	26,400		
	1)보건소 한방진료환자 수입금(보건행정)	2,900,000원*12월 =	34,800		
	1)X-선 진찰수수료(보건행정)	4,870원*300명 =	1,461		
	1)보건지소 일반환자 수입금	91,000,000*12월 =	1,092,000		
	1)보건지소 치과진료환자 수입금	7,000,000원*12월 =	84,000		
	1)보건지소 한방진료환자 수입금	11,500,000원*12월 =	138,000		
	1)간염예방접종 수수료(예방의약)	3,500원*100명 =	350		
	1)치과환자 진료비(건강증진)	3,940원*150명*12월 =	7,092		
	1)치아홈메우기사업 시술비	6,150,000 =	6,150		
	214-09 기타사업수입		5,000	8,500	△3,500
	[ 일반회계 ]		5,000		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4 사업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세무회계과 >		5,000		
1)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유상부품대금 250,000원*20회 =		5,000		
215 징수교부금수입		200,323	140,476	59,847
215-01 징수교부금수입		200,323	140,476	59,847
[ 일반회계 ]		200,323		
< 세무회계과 >		200,323		
1)취득세 2,000,000,000원*3% =		60,000		
1)등록세 3,300,000,000원*3% =		99,000		
1)면허세 75,000,000원*3% =		2,250		
1)공동시설세 50,000,000원*3% =		1,500		
1)지난년도 40,000,000원*3% =		1,200		
1)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60,000,000원*9/100 =		32,400		
1)도로점용료		3,973		
2)전주(한전주, 통신주) 300원*395본*50/100 =		59		
2)통신관로 75원*76,973m*50/100 =		2,886		
2)공중전화박스 12,050원*2개소*50/100 =		12		
2)도로점용(8건) 1,016,000 =		1,016		
216 이자수입		2,162,200	1,946,165	216,035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	2,026,000	1,810,000	216,000
[ 일반회계 ]		1,800,000		

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  
 항 : 216 이자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세무회계과 >		1,800,000		
1)정기예금	60,000,000,000*3% =	1,800,000		
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215,000		
< 시설관리사업소 >		215,000		
1)공공예금 이자수입	215,000,000 =	215,000		
[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]		11,000		
< 주민생활지원과 >		11,000		
1)공공이자수입	11,000,000 =	11,000		
216-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		136,200	136,165	35
[ 주택사업특별회계 ]		100,000		
< 종합민원과 >		100,000		
1)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	100,000,000 =	100,000		
[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]		35,000		
< 친환경농업과 >		35,000		
1)사회진흥소득사업융자금이자수입	35,000,000 =	35,000		
[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]		1,200		
< 주민생활지원과 >		1,200		
1)민간융자금 이자수입	1,200,000 =	1,200		
220 임시적세외수입		15,359,929	16,668,852	△1,308,923
222 순세계잉여금		10,247,467	4,102,710	6,144,757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  
 항 : 222 순세계잉여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22-01 순세계잉여금		10,247,467	4,102,710	6,144,757
[ 일반회계 ]		9,266,480		
< 세무회계과 >		9,266,480		
1)순세계잉여금		9,266,480,000 =	9,266,480	
[ 주택사업특별회계 ]		5,000		
< 종합민원과 >		5,000		
1)순세계잉여금		5,000,000 =	5,000	
[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]		459,850		
< 친환경농업과 >		459,850		
1)2007출납완결 순세계잉여금		259,850,000 =	259,850	
1)사회진흥소득사업융자금원금회수수입		200,000,000 =	200,000	
[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]		516,137		
< 주민생활지원과 >		516,137		
1)순세계 잉여금		516,137,000 =	516,137	
224 전입금		608,578	3,997,858	△3,389,280
224-03 기타회계전입금		608,578	3,997,858	△3,389,280
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117,779		
< 시설관리사업소 >		117,779		
1)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 전입금		117,779,000 =	117,779	
[ 주택사업특별회계 ]		33,440		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  
 항 : 224 전입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종합민원과 >		33,440		
1)주택사업 일반회계전입금	33,440,000 =	33,440		
[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]		457,359		
< 주민생활지원과 >		457,359		
1)일반회계 전입금 (국,도비 보조사업)	457,359,000 =	457,359		
226 융자금원금수입		125,000	334,000	△209,000
226-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		125,000	334,000	△209,000
[ 일반회계 ]		15,000		
< 세무회계과 >		15,000		
1)도서내연발전소 원금회수수입	15,000,000 =	15,000		
[ 주택사업특별회계 ]		95,000		
< 종합민원과 >		95,000		
1)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	95,000,000 =	95,000		
[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]		15,000		
< 주민생활지원과 >		15,000		
1)민간융자금 회수금액	15,000,000 =	15,000		
227 부담금		4,215,000	4,010,000	205,000
227-02 일반부담금		4,215,000	4,010,000	205,000
[ 일반회계 ]		4,215,000		
< 세무회계과 >		4,215,000		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  
 항 : 227 부담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	
	1)수산자원조성금	15,000,000 =	15,000		
	1)도서내연발전소 한전부담금	4,200,000,000 =	4,200,000		
	228 잡수입		133,884	84,284	49,600
	228-04 과태료및범칙금수입		113,884	80,284	33,600
	[ 일반회계 ]		113,884		
	< 세무회계과 >		113,884		
	1)자동차이전, 변경, 말소, 등록지연 과태료	867,000원*12월 =	10,404		
	1)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		22,080		
	2)호적	30,000*1명*12월*23읍면출장소 =	8,280		
	2)주민등록	50,000원*1명*12월*23읍면출장소 =	13,800		
	1)수산업법위반 과태료	650,000원*12월 =	7,800		
	1)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	25,000,000 =	25,000		
	1)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	45,000,000 =	45,000		
	1)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	600,000 =	600		
	1)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	1,000,000 =	1,000		
	1)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	2,000,000 =	2,000		
	228-09 기타잡수입		20,000	4,000	16,000
	[ 일반회계 ]		20,000		
	< 세무회계과 >		20,000		
	1)범칙어선 행정처분 과징금	40,000원*500일 =	20,000		

장 : 200 세외수입  
 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  
 항 : 229 지난년도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29	지난년도수입	30,000	5,000	25,000
229-01	지난년도수입	30,000	5,000	25,000
	[ 일반회계 ]	30,000		
	< 세무회계과 >	30,000		
	1)2007년 출납완결 지난년도 수입	30,000		
	2)자동차과태료	30,000,000 =		
300	지방교부세	162,002,994	115,867,530	46,135,464
310	지방교부세	162,002,994	115,867,530	46,135,464
311	지방교부세	162,002,994	115,867,530	46,135,464
311-01	지방교부세	162,002,994	115,867,530	46,135,464
	[ 일반회계 ]	162,002,994		
	< 세무회계과 >	162,002,994		
	1)보통교부세	136,662,000,000원*113% =	154,428,060	
	1)분권교부세	2,087,934,000 =	2,087,934	
	1)도로교부세	1,487,000,000 =	1,487,000	
	1)종합부동산세	4,000,000,000 =	4,000,000	
400	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	1,315,845	1,198,350	117,495
420	재정보전금	1,315,845	1,198,350	117,495
421	재정보전금	1,315,845	1,198,350	117,495
421-01	재정보전금	1,315,845	1,198,350	117,495

장 :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
 관 : 420 재정보전금  
 항 : 421 재정보전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[ 일반회계 ]	1,315,845		
	< 세무회계과 >	1,315,845		
	1)취득세	2,000,000,000원*27%*90/100 =	486,000	
	1)등록세	3,300,000,000원*27%*90/100 =	801,900	
	1)면허세	75,000,000원*27%*90/100 =	18,225	
	1)지난년도 수입	40,000,000원*27%*90/100 =	9,720	
500	보조금	183,751,299	130,223,405	53,527,894
510	국고보조금등	162,079,246	115,891,485	46,187,761
511	국고보조금등	162,079,246	115,891,485	46,187,761
511-01	국고보조금	52,974,161	40,122,428	12,851,733
	[ 일반회계 ]	52,641,393		
	< 친환경농업과 >	15,470,898		
	1)농업농촌정보화지원사업	4,500,000 =	4,500	
	1)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	25,500,000 =	25,500	
	1)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	100,000,000 =	100,000	
	1)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	20,000,000 =	20,000	
	1)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	964,500,000 =	964,500	
	1)토양개량제공급지원	450,466,000 =	450,466	
	1)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	297,000,000 =	297,000	
	1)유기질비료지원사업	708,750,000 =	708,75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	3,300,000 =	3,300	
1)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지원	8,073,480,000 =	8,073,480	
1)조건불리직불제지원	2,285,794,000 =	2,285,794	
1)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	1,647,000,000 =	1,647,000	
1)RPC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	440,000,000 =	440,000	
1)농산물이력추적관리운영	809,000 =	809	
1)RPC 저온저장고 설치	150,000,000 =	150,000	
1)양곡관리경상보조금	2,697,000 =	2,697	
1)가축방역	33,904,000 =	33,904	
1)가축분뇨처리사업(액비+단독)	239,153,000 =	239,153	
1)과수원정비사업	24,045,000 =	24,045	
< 해양수산물 >		3,963,000	
1)내항여객선 운임보조	1,440,000,000 =	1,440,000	
1)어업용페스티로폼감용기 보급	400,000,000 =	400,000	
1)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	1,850,000,000 =	1,850,000	
1)자율관리어업(공동체) 육성사업	225,000,000 =	225,000	
1)방치폐선처리사업	48,000,000 =	48,000	
< 종합민원과 >		83,000	
1)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	83,000,000 =	83,000	
< 문화관광과 >		130,164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	32,011,000 =	32,011	
1)전통가옥경상보수비지원	4,060,000 =	4,060	
1)급산사자명당 개보수	60,000,000 =	60,000	
1)제15회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참가	3,000,000 =	3,000	
1)국악강사풀제 운영	7,293,000 =	7,293	
1)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	8,300,000 =	8,300	
1)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	15,500,000 =	15,500	
< 경제투자사업단 >		401,000	
1)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	401,000,000원 =	401,000	
< 환경공원과 >		2,472,738	
1)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	2,900,000 =	2,900	
1)도서지역생활환경폐기물소각시설설치	300,000,000 =	300,000	
1)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	4,000,000 =	4,000	
1)산림서비스경관조림	58,337,000 =	58,337	
1)조림사업	161,526,000 =	161,526	
1)큰나무가꾸기	519,600,000 =	519,600	
1)조림지가꾸기	151,554,000 =	151,554	
1)공공산림가꾸기	404,210,000 =	404,210	
1)GIS시스템 운영장비	5,400,000 =	5,400	
1)산불방지	84,282,000 =	84,282	

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1)산림보호강화사업	146,350,000 =	146,350	
	1)숲길조사	10,132,000 =	10,132	
	1)산림병해충방제	612,872,000 =	612,872	
	1)벌채운재로시설지원	1,575,000 =	1,575	
	1)화목겸용보일러	1,500,000 =	1,500	
	1)산지관리지원	400,000 =	400	
	1)산림경영계획서 작성	8,100,000 =	8,100	
	< 주민생활지원과 >		9,676,145	
	1)긴급복지지원사업	103,152,000 =	103,152	
	1)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	240,000,000 =	240,000	
	1)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	152,815,000 =	152,815	
	1)장애아동 부양수당	25,712,000 =	25,712	
	1)장애인 의료비	25,778,000 =	25,778	
	1)장애인 자녀교육비	3,246,000 =	3,246	
	1)장애수당	811,990,000 =	811,990	
	1)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	287,028,000 =	287,028	
	1)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교육비 지원	2,100,000 =	2,100	
	1)장애인 등록진단비	245,000 =	245	
	1)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	2,756,000 =	2,756	
	1)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	3,837,000 =	3,837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1)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	46,170,000 =	46,170	
	1)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	19,000,000 =	19,000	
	1)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	5,163,656,000 =	5,163,656	
	1)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	196,224,000 =	196,224	
	1)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	14,040,000 =	14,040	
	1)해산,장제급여	37,008,000 =	37,008	
	1)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	1,609,200,000 =	1,609,200	
	1)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	99,248,000 =	99,248	
	1)근로소득공제보상금	33,136,000 =	33,136	
	1)지역자활센터 운영	84,860,000 =	84,860	
	1)자활근로사업-위탁	326,292,000 =	326,292	
	1)자활근로사업	326,292,000 =	326,292	
	1)자활근로사업(시설부대비)	49,960,000 =	49,960	
	1)농어민 고용촉진훈련	2,480,000 =	2,480	
	1)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	9,920,000 =	9,920	
	< 사회복지과 >		10,018,415	
	1)기초노령연금지원	6,480,131,000 =	6,480,131	
	1)노인돌보미지원	136,260,000 =	136,260	
	1)노인그룹홈신축	300,000,000 =	300,000	
	1)노인그룹홈장비기능보강	45,000,000 =	45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1)소규모요양시설신축	814,800,000 =	814,800	
	1)농어촌재가복지시설장비기능보강	21,250,000 =	21,250	
	1)독거노인과견도우미사업	252,304,000 =	252,304	
	1)노인일자리사업	170,475,000 =	170,475	
	1)보육시설운영비지원	779,921,000 =	779,921	
	1)보육료지원	869,031,000 =	869,031	
	1)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	6,000,000 =	6,000	
	1)차량운영비 및 교재구입비	21,000,000 =	21,000	
	1)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	16,000,000 =	16,000	
	1)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	21,924,000 =	21,924	
	1)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	1,050,000 =	1,050	
	1)지역아동센터운영	26,400,000 =	26,400	
	1)아동복지교사	26,293,000 =	26,293	
	1)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	3,360,000 =	3,360	
	1)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	6,720,000 =	6,720	
	1)한부모가족고등학생수업료	4,093,000 =	4,093	
	1)성폭력피해자의료비	50,000 =	50	
	1)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수당	700,000 =	700	
	1)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	14,947,000 =	14,947	
	1)자원봉사보험료지원	706,000 =	706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도서개발과 >		8,058,000		
1)하수관거정비사업	2,926,000,000 =	2,926,000		
1)하수처리장정비사업	3,171,000,000 =	3,171,000		
1)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	1,961,000,000 =	1,961,000		
< 재난관리과 >		571,140		
1)범국민안전문화운동	3,969,000 =	3,969		
1)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	1,000,000 =	1,000		
1)소하천정비사업	336,175,000 =	336,175		
1)안좌 한운재해위험지구 정비	180,000,000 =	180,000		
1)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	210,000 =	210		
1)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	390,000 =	390		
1)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396,000 =	396		
1)풍수해보험 보조금	49,000,000 =	49,000		
< 행정지원과 >		77,964		
1)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	14,490,000 =	14,490		
1)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	7,744,000 =	7,744		
1)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	49,130,000 =	49,130		
1)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	6,600,000 =	6,600		
< 농업기술센터 >		321,057		
1)새기술보급사업	142,500,000 =	142,500	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1)농업전문인력양성	23,713,000 =	23,713	
	1)영농현장활동지원	18,950,000 =	18,950	
	1)농가경영컨설팅	6,000,000 =	6,000	
	1)농산물소득조사분석	2,394,000 =	2,394	
	1)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	6,300,000 =	6,300	
	1)특화작목축진시범	70,000,000 =	70,000	
	1)농기계훈련사업	1,200,000 =	1,200	
	1)농촌건강장수마을	50,000,000 =	50,000	
	< 보건소 >		1,372,477	
	1) 한방지역보건사업	2,316,000 =	2,316	
	1)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	43,500,000 =	43,500	
	1) 한방사업기능보강	19,200,000 =	19,200	
	1) '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	1,267,236,000 =	1,267,236	
	1) 모성과영유아관리	1,503,000 =	1,503	
	1)출산가정지원	30,286,000 =	30,286	
	1) 암검진사업	3,558,000 =	3,558	
	1) 노인건강검진	4,278,000 =	4,278	
	1) 전염병실무자과정교육훈련비	600,000 =	600	
	< 대광개발사업소 >		25,395	
	1)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배치인원인건비	9,720,000 =	9,72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	5,000,000 =	5,000	
1)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비	675,000 =	675	
1)청소년수련시설 확충	10,000,000 =	10,000	
[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]		332,768	
< 주민생활지원과 >		332,768	
1)건강생활유지비	151,200,000 =	151,200	
1)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	22,400,000 =	22,400	
1)장애인보장구급여비	141,600,000 =	141,600	
1)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	17,568,000 =	17,568	
511-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	106,732,840	75,340,033	31,392,807
[ 일반회계 ]		106,085,863	
< 친환경농업과 >		1,300,000	
1)친환경명품쌀생산단지조성	200,000,000 =	200,000	
1)친환경생산기반조성(논비작물)	100,000,000 =	100,000	
1)시금치중합처리장지원사업	200,000,000 =	200,000	
1)친환경타조단지조성사업	25,000,000 =	25,000	
1)친환경송아지브랜드생산단지조성	75,000,000 =	75,000	
1)친환경양념채소단지지원	200,000,000 =	200,000	
1)친환경특화작목육성	300,000,000 =	300,000	
1)마늘저온저장사업	200,000,000 =	200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해양수산물 >		8,797,000		
1)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	634,000,000 =	634,000		
1)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	250,000,000 =	250,000		
1)양식어장정화사업	154,000,000 =	154,000		
1)게르마늄젓갈타운조성사업	929,000,000 =	929,000		
1)수산물직매장	1,740,000,000 =	1,740,000		
1)수산물산지가공시설	400,000,000 =	400,000		
1)어촌종합개발사업	4,314,000,000 =	4,314,000		
1)연안정비사업	66,000,000 =	66,000		
1)어촌관광단지조성	250,000,000 =	250,000		
1)수산물종묘매입방류	60,000,000 =	60,000		
< 문화관광과 >		1,275,000		
1)흑산유배문화체험공원	775,000,000 =	775,000		
1)비금생활체육공원조성	200,000,000 =	200,000		
1)신안군공설운동장건립	300,000,000 =	300,000		
< 환경공원과 >		1,229,576		
1)해수욕장수림대생태공원조성	200,000,000 =	200,000		
1)가거도생태복원조성	30,000,000 =	30,000		
1)가로수 조성	200,000,000 =	200,000		
1)증도산림욕장조성	100,000,000 =	100,000	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송공산 산림육장조성	200,000,000 =	200,000	
1)다도해자연휴양림조성	200,000,000 =	200,000	
1)임도시설	299,576,000 =	299,576	
< 사회복지과 >		10,000	
1)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	10,000,000 =	10,000	
< 건설교통과 >		33,341,287	
1)국가관리방조제	10,645,000,000 =	10,645,000	
1)지방관리방조제	17,735,000,000 =	17,735,000	
1)발기반 정비사업	3,347,462,000 =	3,347,462	
1)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	624,225,000 =	624,225	
1)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	300,000,000 =	300,000	
1)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	265,600,000 =	265,600	
1)소규모용수개발사업	424,000,000 =	424,000	
< 도서개발과 >		56,898,000	
1)도서종합개발사업	31,898,000,000 =	31,898,000	
1)도서식수원개발사업	25,000,000,000 =	25,000,000	
< 행정지원과 >		2,900,000	
1)제2기 신활력사업	2,900,000,000 =	2,900,000	
< 농업기술센터 >		335,000	
1)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	100,000,000 =	100,000	

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1)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	25,000,000 =	25,000	
	1)농촌지도기반조성	210,000,000 =	210,000	
	[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]		646,977	
	< 시설관리사업소 >		646,977	
	1)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	272,000,000 =	272,000	
	1)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	224,977,000 =	224,977	
	1)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	150,000,000 =	150,000	
	511-03 기금		2,372,245	429,024
	[ 일반회계 ]		2,372,245	
	< 친환경농업과 >		7,280	
	1)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	7,280,000 =	7,280	
	< 문화관광과 >		1,975,711	
	1)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배치	30,870,000 =	30,870	
	1)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	20,580,000 =	20,580	
	1)생활체육교실운영	4,500,000 =	4,500	
	1)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	7,261,000 =	7,261	
	1)가고싶은섬(홍도) 시범사업	1,912,500,000 =	1,912,500	
	< 보건소 >		389,254	
	1) 주민건강생활실천사업	28,562,000 =	28,562	
	1) 금연클리닉사업	38,290,000 =	38,29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10 국고보조금등  
 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 모성과 영유아관리	3,367,000 =	3,367		
1) 암검진사업	74,668,000 =	74,668		
1) 노인의치보철사업	25,100,000 =	25,100		
1) 치아홈메우기	3,520,000 =	3,520		
1)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	580,000 =	580		
1)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	27,000,000 =	27,000		
1) 임신예방집중(일본뇌염외4종)	6,280,000 =	6,280		
1) 영유아예방접종(피디티외5종)	6,709,000 =	6,709		
1)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(기간제근로자)	9,750,000 =	9,750		
1)맞춤형방문건강관리(기간제근로자)	77,760,000 =	77,760		
1) 방문보건 전담인력교육	816,000 =	816		
1) 방문보건 담당자 교육	1,500,000 =	1,500		
1)방문보건최고관리자교육	48,000 =	48		
1)자원봉사자교육	400,000 =	400		
1)재가암환자관리사업	5,100,000 =	5,100		
1)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관리사업	3,000,000 =	3,000		
1)만성질환자관리담당자 교육	739,000 =	739		
1)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통비	200,000 =	200		
1)암치료비지원	60,205,000 =	60,205		
1)지역사회건강조사	15,660,000 =	15,660	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520 시·도비보조금등	21,672,053	14,331,920	7,340,133
521 시·도비보조금등	21,672,053	14,331,920	7,340,133
521-01 시·도비보조금등	21,672,053	14,331,920	7,340,133
[ 일반회계 ]	21,587,500		
< 친환경농업과 >	2,445,082		
1)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1,118,350		
2)농업농촌정보화지원사업	1,577,000 = 1,577		
2)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	5,100,000 = 5,100		
2)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	20,000,000 = 20,000		
2)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	6,000,000 = 6,000		
2)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	482,250,000 = 482,250		
2)토양개량제공급지원	56,309,000 = 56,309		
2)친환경명품쌀생산단지조성	40,000,000 = 40,000		
2)친환경생산기반조성(녹비작물)	20,000,000 = 20,000		
2)조건불리직불제지원	293,889,000 = 293,889		
2)시금치종합처리장지원사업	26,700,000 = 26,700		
2)RPC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	33,000,000 = 33,000		
2)RPC 저온저장고 설치	9,000,000 = 9,000		
2)가축방역	10,312,000 = 10,312		
2)친환경타조단지조성사업	3,400,000 = 3,400	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2)친환경송아지브랜드생산단지조성	10,000,000 =	10,000	
	2)과수원정비사업	7,213,000 =	7,213	
	2)친환경양념채소단지지원	26,800,000 =	26,800	
	2)친환경특화작목육성	40,000,000 =	40,000	
	2)마늘저온저장사업	26,800,000 =	26,800	
	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,326,732	
	2)선도농업인컴퓨터구입지원	3,840,000 =	3,840	
	2)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	2,250,000 =	2,250	
	2)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	184,771,000 =	184,771	
	2)한국농어민신문보급사업	8,297,000 =	8,297	
	2)농가도우미지원사업	1,080,000 =	1,080	
	2)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	33,720,000 =	33,720	
	2)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	37,500,000 =	37,500	
	2)친환경농업단지조성	579,600,000 =	579,600	
	2)경운기채양구설치지원	9,548,000 =	9,548	
	2)친환경맞춤형고품질쌀생산단지	19,440,000 =	19,440	
	2)밭작물기계화단지육성	11,340,000 =	11,340	
	2)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지원	19,440,000 =	19,440	
	2)우리콩재배면적확대지원	1,560,000 =	1,560	
	2)토종농산물살리기지원	2,000,000 =	2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다목적친환경인력절감승용관리기	5,200,000 =	5,200	
2)햅쌀품질고급화및단지조성	14,700,000 =	14,700	
2)지역특화품목농업법인체육성	19,000,000 =	19,000	
2)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식재료지원	117,513,000 =	117,513	
2)농산물고정고객확보사업	2,500,000 =	2,500	
2)1시군1생산자조직육성사업	1,250,000 =	1,250	
2)신의 가락작목반고추가공지원	30,000,000 =	30,000	
2)소형저온저장고설치	13,500,000 =	13,500	
2)홍보시식용샘플제작비	6,907,000 =	6,907	
2)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	1,920,000 =	1,920	
2)벌꿀산업육성	6,865,000 =	6,865	
2)한우등록사업	1,960,000 =	1,960	
2)무항생축산물생산지원	1,040,000 =	1,040	
2)축사환경개선제공급	1,695,000 =	1,695	
2)깨끗한농장가꾸기	4,000,000 =	4,000	
2)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지원	360,000 =	360	
2)축산농가가축방역장비지원	600,000 =	600	
2)가축공동방제단	28,302,000 =	28,302	
2)연결체조사료생산기계장비	28,566,000 =	28,566	
2)연결체조사료제조운송비	20,510,000 =	20,51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벗짚암모니아처리비닐지원	432,000 =	432	
2)조사료용발효제공급	1,676,000 =	1,676	
2)가축음용수질개선지원	750,000 =	750	
2)송아지생산안정사업	3,510,000 =	3,510	
2)농작물재해보험료	9,990,000 =	9,990	
2)친환경약용작물생산지원	3,600,000 =	3,600	
2)무배추사마귀병방제지원	6,000,000 =	6,000	
2)수급불안채소류작목전환	80,000,000 =	80,000	
< 해양수산물 >		2,268,079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,652,707	
2)내항여객선운임보조	720,000,000 =	720,000	
2)자율관리어업(공동체)육성사업	9,000,000 =	9,000	
2)게르마늄젓갈타운조성사업	371,600,000 =	371,600	
2)어촌종합개발사업	539,250,000 =	539,250	
2)수산물묘매입방류	12,857,000 =	12,857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615,372	
2)섬주민 생필품(LP가스) 구입	90,000,000 =	90,000	
2)어선용 면세류 수송비지원	48,000,000 =	48,000	
2)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	6,192,000 =	6,192	
2)전복양식장 관리기지원사업	8,000,000 =	8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	25,000,000 =	25,000	
2)김양식 무기산 폐기지원	3,000,000 =	3,000	
2)해조류 틈새양식지원	9,000,000 =	9,000	
2)사료저장고시설사업	120,000,000 =	120,000	
2)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	75,000,000 =	75,000	
2)젓갈위생가공시설지원	90,000,000 =	90,000	
2)젓갈위생용기지원	100,000,000 =	100,000	
2)갑각류소독제지원사업	33,480,000 =	33,480	
2)어류소독제지원사업	7,700,000 =	7,700	
< 종합민원과 >		43,051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30,987	
2)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	30,987,000 =	30,987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2,064	
2)지적측량환경고도화사업	12,064,000 =	12,064	
< 문화관광과 >		1,363,600	
1)국비도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,053,000	
2)금산사 자명당 보수	30,000,000 =	30,000	
2)제1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	15,000,000 =	15,000	
2)흑산유배문화체험공원	52,000,000 =	52,000	
2)가고싶은섬(홍도) 시범사업	956,000,000 =	956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310,600	
2)도지정무형문화재전수비지원	31,200,000 =	31,200	
2)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비지원	1,200,000 =	1,200	
2)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	150,000,000 =	150,000	
2)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	5,000,000 =	5,000	
2)제89회 전국체육대회지원사업	18,200,000 =	18,200	
2)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	5,000,000 =	5,000	
2)홍도보전및개발계획수립	100,000,000 =	100,000	
< 경제투자사업단 >		270,000	
1)도비보조에 따른도비보조금		270,000	
2)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	65,000,000원 =	65,000	
2)섬 관광자원화 사업(테마섬 조성)	200,000,000원 =	200,000	
2)섬관광자원 홍보 등산대회 지원	5,000,000원 =	5,000	
< 환경공원과 >		891,853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588,120	
2)가로수조성	93,200,000 =	93,200	
2)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	1,200,000 =	1,200	
2)중도산림욕장조성	25,200,000 =	25,200	
2)송공산산림욕장조성	50,420,000 =	50,420	
2)다도해자연휴양림조성	21,473,000 =	21,473	

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산림서비스경관조성	17,501,000 =	17,501	
2)조림사업	37,071,000 =	37,071	
2)큰나무가꾸기	123,269,000 =	123,269	
2)조림지가꾸기	36,373,000 =	36,373	
2)공공산림가꾸기	49,363,000 =	49,363	
2)GIS시스템운영장비	3,780,000 =	3,780	
2)산불방지	58,998,000 =	58,998	
2)산림병해충방제	67,842,000 =	67,842	
2)산림경영계획서 작성	2,430,000 =	2,430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303,733	
2)폐기물지원사업	75,600,000 =	75,600	
2)영농폐기물마을단위수집시설설치사업	65,000,000 =	65,000	
2)폐비닐수거장려금	8,210,000 =	8,210	
2)농약빈병수거함설치사업	3,500,000 =	3,500	
2)폐형광등전용수거함보급사업	2,250,000 =	2,250	
2)해안쓰레기분리선별장시범사업	125,000,000 =	125,000	
2)산림공익요원 운영	19,653,000 =	19,653	
2)특색있는가로수조성	2,000,000 =	2,000	
2)숲가꾸기지역내산림소득자원조성	2,520,000 =	2,520	
< 주민생활지원과 >		1,343,887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,300,781		
2)긴급복지지원사업	12,894,000 =	12,894		
2)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	30,000,000 =	30,000		
2)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	19,102,000 =	19,102		
2)장애아동 부양수당	5,510,000 =	5,510		
2)장애인 의료비	3,222,000 =	3,222		
2)장애인 자녀교육비	406,000 =	406		
2)장애수당	173,998,000 =	173,998		
2)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	25,326,000 =	25,326		
2)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교육비 지원	450,000 =	450		
2)장애인 등록진단비	123,000 =	123		
2)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	1,919,000 =	1,919		
2)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인건비	23,085,000 =	23,085		
2)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	9,500,000 =	9,500		
2)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	645,457,000 =	645,457		
2)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	24,528,000 =	24,528		
2)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	1,755,000 =	1,755		
2)해산,장제급여	4,626,000 =	4,626		
2)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	201,150,000 =	201,150		
2)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	12,406,000 =	12,406	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근로소득공제보상금	4,142,000 =	4,142	
2)지역자활센터 운영	12,124,000 =	12,124	
2)자활근로사업-위탁	40,787,000 =	40,787	
2)자활근로사업	40,787,000 =	40,787	
2)자활근로사업(시설부대비)	6,244,000 =	6,244	
2)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	1,240,000 =	1,240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43,106	
2)섬복지도우미 인건비	25,500,000 =	25,500	
2)복지급여관리 후견인 문자서비스	510,000 =	510	
2)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	2,640,000 =	2,640	
2)공공근로 인건비 및 간식비	14,100,000 =	14,100	
2)공공근로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입	80,000 =	80	
2)공공근로사업 추진 급량비	80,000 =	80	
2)공공근로사업 현지점검	196,000 =	196	
< 사회복지과 >		2,579,208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,511,245	
2)기초노령연금지원	144,003,000 =	144,003	
2)노인돌보미지원	21,143,000 =	21,143	
2)노인그룹홈신축	150,000,000 =	150,000	
2)노인그룹홈장비기능보강	22,501,000 =	22,501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소규모요양시설신축	174,601,000 =	174,601	
2)농어촌재가복지시설장비기능보강	10,625,000 =	10,625	
2)독거노인파견도우미사업	31,538,000 =	31,538	
2)노인일자리사업	85,238,000 =	85,238	
2)보육시설운영비	389,960,000 =	389,960	
2)보육료지원	434,516,000 =	434,516	
2)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	3,000,000 =	3,000	
2)차량운영비 및 교재구입비	10,500,000 =	10,500	
2)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	8,000,000 =	8,000	
2)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	4,698,000 =	4,698	
2)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	225,000 =	225	
2)지역아동센터운영	13,200,000 =	13,200	
2)아동복지교사	5,400,000 =	5,400	
2)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	720,000 =	720	
2)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	840,000 =	840	
2)한부모가족고등학생수업료	512,000 =	512	
2)성폭력피해자의료비	25,000 =	25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,067,963	
2)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	13,500,000 =	13,500	
2)95세이상장수노인생신챙겨드리기	1,600,000 =	1,6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2)노인교통수당	61,670,000 =	61,670	
	2)노인회지회게이트볼대회기금	5,011,000 =	5,011	
	2)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	38,500,000 =	38,500	
	2)권역별목욕장신축	300,000,000 =	300,000	
	2)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	9,000,000 =	9,000	
	2)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	139,658,000 =	139,658	
	2)노인생활시설특별식비지원	3,918,000 =	3,918	
	2)노인생활시설화장용품비지원	413,000 =	413	
	2)노인생활시설김장및부식비지원	585,000 =	585	
	2)노인생활시설중사자특별수당	43,440,000 =	43,440	
	2)재가복지시설운영비지원	10,000,000 =	10,000	
	2)재가복지시설중사자특별수당	5,640,000 =	5,640	
	2)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	84,005,000 =	84,005	
	2)시설중사자특별수당	22,320,000 =	22,320	
	2)퇴소아동자립정착금	1,000,000 =	1,000	
	2)시설아동대학진학금	3,000,000 =	3,000	
	2)시설아동생활용돈	6,540,000 =	6,540	
	2)시설아동생필품구입	10,800,000 =	10,800	
	2)성장고아자립정착금	2,000,000 =	2,000	
	2)소년소녀가정대학진학금	2,000,000 =	2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2)소년소녀가정세대위로금	20,400,000 =	20,400	
	2)소년소녀가정세대명절제수비	8,500,000 =	8,500	
	2)소년소녀가정지원	2,520,000 =	2,520	
	2)가정위탁양육지원	840,000 =	840	
	2)결식아동급식지원	8,213,000 =	8,213	
	2)방학중아동급식지원	34,965,000 =	34,965	
	2)학기중아동급식비	139,650,000 =	139,650	
	2)저소득모부자가정생활안정금	8,100,000 =	8,100	
	2)저소득모부자가정대입자녀학자금	4,000,000 =	4,000	
	2)저소득모부자가정양육비	547,000 =	547	
	2)저소득모부자가정중고생교통비	1,728,000 =	1,728	
	2)저소득모부자장애가정생활용품	250,000 =	250	
	2)일군위안부생활안정금	1,500,000 =	1,500	
	2)여성단체를통한지역특산물판로	2,500,000 =	2,500	
	2)테마교육	500,000 =	500	
	2)여성직업훈련강사수당	1,800,000 =	1,800	
	2)여성직업훈련	4,200,000 =	4,200	
	2)여성이장마을부업장려사업	1,050,000 =	1,050	
	2)청소년예절교실	2,200,000 =	2,200	
	2)자원봉사활성화지원	4,153,000 =	4,153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	1,500,000 =	1,500	
2)경로당무료급식	25,390,000 =	25,390	
2)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	23,257,000 =	23,257	
2)푸드뱅크운영비 지원	1,000,000 =	1,000	
2)유통식품검체수거비	1,000,000 =	1,000	
2)음식문화큰잔치부스설치	1,500,000 =	1,500	
2)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	2,100,000 =	2,100	
< 건설교통과 >		2,770,409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2,578,086	
2)밭기반정비사업	251,250,000 =	251,250	
2)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	46,836,000 =	46,836	
2)지방관리방조제	2,280,000,000 =	2,280,000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92,323	
2)흙수로구조물화사업	76,000,000 =	76,000	
2)누수저수지보수사업	30,000,000 =	30,000	
2)지방도 수로원 인건비	86,323,000 =	86,323	
< 도서개발과 >		7,086,285	
1)국고보조에 따른도비보조금		7,001,285	
2)도서종합개발사업	6,835,285,000 =	6,835,285	
2)하수처리장정비사업	166,000,000 =	166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1)도비보조에 따른도비보조금		85,000	
2)해수욕장편의시설정비	85,000,000 =	85,000	
< 재난관리과 >		20,876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5,164	
2)풍수해보험 보조금	4,500,000 =	4,500	
2)민방위통리 대장 교육비	140,000 =	140	
2)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	260,000 =	260	
2)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264,000 =	264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5,712	
2)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	4,000,000 =	4,000	
2)노후강우량기기 교체사업	4,500,000 =	4,500	
2)민방위 교육 훈련강사수당	570,000 =	570	
2)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	3,000,000 =	3,000	
2)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	1,710,000 =	1,710	
2)민방위장비시효 경과품 교체	332,000 =	332	
2)범도민 안전문화운동	1,600,000 =	1,600	
< 행정지원과 >		78,270	
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3,300	
2)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	3,300,000 =	3,300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74,970	

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5.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	2,400,000 =	2,400	
2)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	2,500,000 =	2,500	
2)주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	1,400,000 =	1,400	
2)주민정보화교재구입	1,670,000 =	1,670	
2)정보화마을조성(비금면)	50,000,000 =	50,000	
2)인터넷사랑방 확충	17,000,000 =	17,000	
< 농업기술센터 >		121,648	
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21,648	
2)전문지도능력배양시험연구기관위탁교육	1,000,000 =	1,000	
2)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	1,500,000 =	1,500	
2)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구독지원	1,000,000 =	1,000	
2)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지원	2,473,000 =	2,473	
2)제7회대한민국농업박람회시군센터지원	5,000,000 =	5,000	
2)여성친환경 농업대학 운영	2,000,000 =	2,000	
2)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	2,400,000 =	2,400	
2)농촌여성 생활개선 정보지 구독	375,000 =	375	
2)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지원	2,000,000 =	2,000	
2)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	25,000,000 =	25,000	
2)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	5,000,000 =	5,000	
2)전라남도 음식 상품화 시범	8,000,000 =	8,00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)친환경고품질우량종사증식시범	2,000,000 =	2,000	
2)친환경 인증 거점 종합검정실 운영	40,000,000 =	40,000	
2)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	4,000,000 =	4,000	
2)새집증후군예방공기정화식물교육장시범	2,500,000 =	2,500	
2)담근먹이사료용벼새품종재배시범	2,400,000 =	2,400	
2)축산악취제거용미생물배양기술보급사업	2,000,000 =	2,000	
2)FTA 대응틈새소득작물시범사업	9,000,000 =	9,000	
2)산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	4,000,000 =	4,000	
< 보건소 >		305,252	
1)국고보조에따른 보조금		287,617	
2) 한방지역보건사업	695,000 =	695	
2)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	21,750,000 =	21,750	
2) '08년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	158,405,000 =	158,405	
2)출산가정지원	52,488,000 =	52,488	
2)암검진사업	22,400,000 =	22,400	
2)노인건강검진	918,000 =	918	
2)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	130,000 =	130	
2)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	8,100,000 =	8,100	
2)임시예방접종(일본뇌염4종)	3,140,000 =	3,140	
2)재가암환자관리사업	1,530,000 =	1,530	

장 : 500 보조금  
 관 : 520 시·도비보조금등  
 항 : 521 시·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	
	2)암치료비지원	18,061,000 =	18,061		
	1)도비보조에 따른 보조금		17,635		
	2)농어촌건강증진사업	10,000,000 =	10,000		
	2)항결핵제보급수수료교부금	78,000 =	78		
	2)정신건강증진교실	1,044,000 =	1,044		
	2)치매예방교육	300,000 =	300		
	2)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	2,325,000 =	2,325		
	2)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	3,888,000 =	3,888		
	[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]		84,553		
	< 주민생활지원과 >		84,553		
	1)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66,553		
	2)장애인보장구 급여비	28,320,000 =	28,320		
	2)대불금 및 본인환급금	4,480,000 =	4,480		
	2)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	3,513,000 =	3,513		
	2)건강생활유지비	30,240,000 =	30,240		
	1)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		18,000		
	2)시군 행정비	18,000,000 =	18,000		
600	지방채및예치금회수		7,093,000	5,962,000	1,131,000
610	국내차입금		7,093,000	5,962,000	1,131,000
613	지역개발기금		7,093,000	0	7,093,000

장 :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
 관 : 610 국내차입금  
 항 : 613 지역개발기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	613-01 지역개발기금시·도용자금수입	7,093,000	0	7,093,000
	[ 일반회계 ]	7,093,000		
	< 도서개발과 >	7,093,000		
	1)도서식수원개발사업	7,093,000		
		7,093,000,000 =		